

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6. 6. 16 선고 2016가단20797 판결 [주식매수청구]

전 문

원고A

피고1. B

2. C

3. D

변론 종결무변론

판결 선고2016. 6. 16.

주 문

1.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0,000,000원 및 이에 대한 2016. 4. 21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%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 :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2. 적용법조 : 무변론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, 제257조)

판사강진우

별지